

기술 보호 · 활용 위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하자

글 | 김 현 _ 법무법인 세창 대표, 대한변협 사무총장 hyunkim@sechanglaw.com

엘빈 토플러, 피터 드러커 등 많은 미래학자들이 21세기
는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식기반사회가 될 것이
라는 예견을 한 이래, 선진국의 사회 및 기업들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점차 강화되어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누구도 오늘
의 사회가 지식기반사회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으며,
대부분의 CEO들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생산요소 및
자산으로서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패러다임적 변화를 반영하려는 듯 많은 학자들이 지식경영을
외치고 있으며, 기업들은 지식경영을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노
력하고 있다.

강력한 경쟁무기이자 수익 원천인 지적재산권

이제 기업은 기업 내부 곳곳과 기업 외부에, 즉 공급 및 판매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협력업체 및 고객에 지식이 산재해 있으
며, 앞으로 이러한 지식을 모으고 조직화함으로써 제공되는 제
품 및 서비스의 가치 향상, 고객 창출 및 만족, 기업경쟁력 강화

등 기업의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에 이르렀다. 또
한 기업은 이러한 기업의 목적 달성에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
권이 경쟁의 강력한 무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그 자
체가 수익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기
업이 보유하는 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무형자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지적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지적 활동의 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은 그
러한 산물의 성격에 맞게, 그리고 창작자의 이익 및 타인의 이
익을 고려하여 사회적 균형 및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보
호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지적 재산의 침해는 민법상 일반불
법행위제도에 의하여 구제될 수도 있으나, 이에 의하면 사전적
침해 금지는 인정되지 않고 사후적 손해배상만을 받을 수 있으
므로 그 보호조치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지적재산에 대한 침해 행위를 직접 규
제하는 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적재산에 대하
여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저작권법, 특허법 등을
두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대표적인 권리인 특허권은 타인이 특허된 기
술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기 때문에 특허권자
는 이러한 특허권을 사용함으로써 시장의 통제력을 갖는 지위
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권의 경쟁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지식 자체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보호로부터
유래하는 것이고, 이것이 특허권 가치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특허권은 지식(발명)의 자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법에 의하여
창설적으로 부여되는 권리가기 때문에 권리자의 청구와 국가
기관에 의한 적격성 심사 및 등록이라는 권리화 절차를 두고



있고, 권리자와 제3자의 이익 균형을 위하여 유한한 권리 존속 기간을 두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자가 자신이 권리화하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는 명세서(특히 청구 범위)를 작성하여 국가기관(특허청)에 권리의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허청은 제출된 발명이 아무리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권리자가 설명 및 요구한 권리범위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권리자는 애초부터 자신의 발명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합당한,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권리범위를 스스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기업 내외에 산재한 지식을 조직화하여 기업 경쟁력의 원천 및 기업자산으로 승화시키고 있지는 못한 형편이고, 또한 기업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전략적 지적재산권은 아니더라도 많은 지적재산권, 특히 특허권은 활용되지 않고 기업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실정인 것 같다. 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 축적 또는 창출된, 경쟁력 있는 지식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지적자산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것을 독점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 및 노하우로서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 노력-이 미흡한 것이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개발 및 지적재산권, 특히 특허를 단순히 비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도기업일수록 무형재산 가치 훨씬 더 높아

이전부터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물론 지적재산권이 법에 의해 강력한 독점적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에 강력한 경쟁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수익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중

요성의 강조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제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지적재산권을 단순한 지식의 응고물로서 파악하여 창출된 지적재산권의 특성 및 활용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 활동 및 이의 강화에 필요한 지식을 어떻게 창출, 획득, 수집, 공유 및 조직화하고 프로세스화할 것인가라는 지식경영의 전략적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역할 및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IBM과 같은 선진국의 선도기업들은 기업가치가 장부가치와 대비할 때 많게는 10배 가량 높다고 알려져 있듯이 기술력을 가진 선도기업일수록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식기반경제의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선도기업들은 기업 자체 내에 특허변호사, 라이선싱 전문가 등 특허전문가를 수백~수천 명 정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협력 특허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특허기술의 직접 실시뿐만 아니라 특허침해의 방지 및 라이선싱을 통하여 막대한 로열티 수익을 얻고 있다. 이것은 우수한 연구인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자체 특허전문가를 통한 지적재산권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도 이제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바, 지금이라도 그 진입의 핵심 추진력이 되는 기술의 보호와 활용 전략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상시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과 코넬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워싱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 및 뉴욕주 변호사, 런던국제중재재판소 중재인, 과기부·건교부 법률고문, 대한변협 사무총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